

규정	문서번호 TWP-A234			
11/8	제정일자	2016. 10. 13.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일자			
궁전내의교 교식전 영웅경영	개정번호 0	페이지 1/13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 보칙
부칙

작성부서 서무과	제정일자	2016.10.13.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대외협력본부장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홍보처장	학생처장	산학협력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문서번.	호	TWP	-A234
제정일	자	2016.	10. 13.
개정일:	자		
개정번호	0	페이지	2/13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규정 문서번호 TWP-A234 제정일자 2016. 10. 13.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3/13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원대학교(이하 "이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대학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라. 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이 대학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교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총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교직원"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교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 가.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 · 예산 · 감사 · 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소속 기관 교직원
- 다. 사무를 위임 ·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 · 위탁을 받는 교직원
- 라.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교직원
-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이 대학에 속한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TWP-A234 문서번호 규정 제정일자 2016. 10. 13.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4/13

동워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교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 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 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 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 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 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5.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 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6. 그 밖에 총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교직원이 그 직무 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교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문서번호 TWP-A234 제정일자 2016. 10. 13.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번호 0 페이지 5/13

직무를 재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문서나 민원의 접수
- 2. 증명서 등의 발급
- 3.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6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 대학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교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규정문서번호TWP-A234제정일자2016. 10. 13.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6/13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 대학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교직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 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총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교직원은 직무관련교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규정 문서번호 제정일자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7/13

TWP-A234

2016. 10. 13.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 격려 ·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③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교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교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교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직원은 이 대학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교직원은 이 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교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승인 후, 외부강의·회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④ 총장은 제1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청한 외부강의·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규정

문서번호 TWP-A234 제정일자 2016. 10. 13. 개정일자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번호 0 페이지 8/13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 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사전 승인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별표2의 조치기준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 ⑥ 교직원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교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교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교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교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교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총장이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교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규정 문서번호 TWP-A234 제정일자 2016. 10. 13.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9/13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교직원이 총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총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 · 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6조(장계)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별표1, 별표2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이 강령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교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 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 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총장



규정

문서번호 TWP-A234 제정일자 2016. 10. 13. 개정일자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번호 0 페이지 10/13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총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
-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 체 등에 기증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4.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기준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교육) ① 총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총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 서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30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TWP-A234 규정 제정일자 2016. 10. 13.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11/13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포상) 총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행동강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교직원 행동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대학의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약 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O) [1] (2)	그 저	문서번호	TWP-A234
10 TO 10	규정	제정일자	2016. 10. 13.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일자	
סא חאואף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번호 0	페이지 12/13

[별표 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17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행 위 유 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	동	감봉 • 정직	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수수의 경우	니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	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수	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	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동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수	동	해임ㆍ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녜	동	해임•파면		파면	

Q) CI Q/	그저	문서번호	TWP-A234	
- A	규정	제정일자	2016. 10. 13.	
	도이미하고 고지의 체도가려	개정일자		
ON UNINE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개정번호 0	페이지 13/13	

[별표 2]

외부강의·회의등의 승인신청(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20조 관련)

조치 대상	조치 기준
사후 신고	주의 또는 경고
미신고	경고 또는 징계
허위 신고	징계
초과금액 미신고, 미반환	경고 또는 징계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7	디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u>!</u> 자		
4 PHOI	성명			생년월일			
소명인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힏
		소[명인			(서명 또	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성한 직	무수행을 해치는 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자		
ルにしつ おの	성 명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	든는 인)

외부강의·회의 등 신청서

	교무과장	교무처장	총장
결			
^П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ì					
신고자	직위(직급)									
외부	[] 교육과정		[] k	베미나, 공	·청회, 토론호	I, 발표	E회, 심	포지엄		
강의·회의 유형	[] 회의		[]7	' E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Ī	[] 빌	발표, 토론	-					
	[] 심사, 평기	t, 자문, 의결	[]7	'IEH()					
요청인	기관명				대표지	}				
	담당부서				연락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일괄신고			횟수 : 시간 :		
대	가	총액 <u>만</u> 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	또는 인)
			유의기	나 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 3. 대가가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청사유란에 구체적으로 적시함
- 4.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H O	i) 신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	<u> </u> 사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신 고 사 형	j J					
[] 금전 차용		[]	금전	 ! 대부				
	성명			생년월일				
거 래 상대방	주소			연락처				
040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	련자	[] 직무	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	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이	4							
	성명			생년월일				
대여인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	련자	[] 직무	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	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 인)

[별지 제5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긴	ŀ	60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자	직업			전화번호					
	주소								
	성명			직위 (직급)					
피신고자	소속								
※ 신고내용을	ł 확인·조사하	는 과정에서 신고자으	신분을 밝히는데	네 동의하는지 여부		[] 동 [] 부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록						<i></i>	등빙자료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접수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제공	7	해 공	자	처리	처리	행동강령	
번호	일시	소속	성명	연락처	금품 등	받은 일시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내용	일시	책임관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상 담 기 록 관 리 부											
상담일시			상단	計유형	[] 방	문 []전화	[] 기E)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딦		
		행동강령책임된	라					(서명 또	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나는 동원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서 「동원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 하게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원대학교 총장 귀하